SHIN&KIM
법무법인(유) 세종

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해당 여부

미국법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하던 청구인은 국내법원 판결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물게 되었습니다. 이 지연손해금이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그렇다고 회신하였습니다.[1] 한·미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국내법대로 원천징수의무가 생긴다는 말입니다.

[1] 재국조-587(2026. 10. 7.), 서면법규국조 2025-1(2026. 10. 29.).

관련구성원

백제흠
대표변호사

02-316-4052
jhebaik@shinkim.com

정영민
선임공인회계사

02-316-7269
ymchung@shinkim.com

김병규
고문

02-316-4504
bkykim@shinkim.com

김병호
세무사

02-316-7959
bhkim@shinkim.com

김경희
세무사

02-316-4325
kheekim@shinkim.com

Copyright SHIN & KIM LLC. All rights reserved.